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6. 29.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8,6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3명 과태료 190만원 ~ 2,830만원 부과 : 7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주)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7명은 2021.1.26.~2023.12.14. 기간 중 ㉠보험 등 6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66.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1.8.12.~2023.12.22. 기간 중 ㉠보험 등 6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0.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乙 등 5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총 8.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